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2 | 2024.04.22 (2024.04.15~04.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15~04.21)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② 관광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③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④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⑤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 지속,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 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①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활용 활성화 방안 ② 선제적 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④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⑥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 바,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게 되어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포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허위 과대 비방 표시 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 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정해진 국회의사일정은 없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18 야당 단독으로 5개 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피해지원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하였으며, 정무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야당의 소집(4/23) 요구가 있어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지난 4/19 여당측에 민생법안 처리 위해 제21대국회의 남은 임기내에 ‘최소 2회 이상 본회의 (5/2, 5/28) 개최’ 등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비상경제장관회의 -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7
- 비상경제장관회의 -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10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청년 등 정부혜택알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7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7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고용노동부) 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1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5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7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7
- 건축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0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1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3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 3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38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40
-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4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15~04.21) [바로가기](#)

- [에너지 자원]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발간
-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 2대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04-15

I. 관광 분야: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 광역관광개발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 (개발비전)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 (개발목표)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발굴
- (사업내용)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 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

① (권역별 특화) 지역 중심의 3대 권역별 전략사업 추진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 기반 일상 여행 환경 조성
-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
-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만(灣)과 섬의 여행 여건 개선, 해양 레저 기반 구축

② (5대 관광매력 특화)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사업 추진

- (관광만)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 (관광경관명소)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 (관광스테이) 레저 휴양 위케이션 공간 확충
- (수변관광)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 (관광정원) 유희시설 테마정원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① 1단계('24~'27) 사업 원활한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② 사업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 점검

- 사전행정절차 이행, 건축계획, 콘텐츠 등 기획 단계 사업내용 점검 및 컨설팅 지원(18개 사업/'24. 4월~6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4년 예산 반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개발계획('24~'33)			'24년		
	사업비(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개발	진흥*		개발	진흥*
부 산	87,055	6	6	2,645	2	1.4
광 주	52,273	3	5	2,767	1	2.3
울 산	116,252	8	4	3,195	5	1.3

전 남	580,599	56	11	11,134	25	4.75
경 남	438,755	36	7	8,037	15	4.25
계	1,326,484	109	33	27,778	48	14

* 공동사업은 시도별 사업금액 비중에 따라 개수 산출

시도	사업명	금액	시도	사업명	금액
부산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320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235
부산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2,145	광양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125
광주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507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542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260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280
울산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810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482
울산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00	고성	자란 관광만 구축(T-UAM)	966
울산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300	고성	상죽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	319
울산	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315	통영	통영 관광만 구축(T-UAM)	1,805
해남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1,091	통영	사랑도 관광기반 구축	222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1,036	창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340
광양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91	창원	근대 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85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20	창원	K예술마실점 네트워크 구축	240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486	김해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	290
구례	섬진강 레인보우 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240	밀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510
곡성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766	함양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413
여수	뷰티 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491	남해	해양스포츠유여행 플랫폼 조성	245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735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423
무안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345	광주	무등산권역 지오달밤 스테이 상품화	100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42	광주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100
강진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	120	전남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100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337	전남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100
나주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234	전남, 경남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100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372	전남, 경남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200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29	전남, 경남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100
진도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79	부산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	100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325	경남	K-관광명소 상품화	150
목포	문학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40	울산	고부가 K-관광상품 및 이벤트 육성	150
담양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42	경남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250
함평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623	5개시도	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200
화순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289	5개시도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200
장흥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416	5개시도	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200

II. 원전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태계 완전 복원)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R&D도 강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세부 내용>

- ① (일감) '22년 2.4조원 → '23년 3.0조원 → '24년 3.3조원, 원전 생태계 일감 지속 확대
- ② (금융) '23년 0.5조원 → '24년 1조원, 정책자금(융자·보증) 등 원전 특별금융 확대
- ③ (세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위주로 반영되어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기술 까지 확대 → 제작·가공 중심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 강화
- ④ (R&D) 방폐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모도 현정부 5년간 민·관 4조원 규모로 확대

- ② (SMR 선도국 도약)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 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

<‘SMR 선도국 도약’ 세부 내용>

- ① (i-SMR)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SMR 노형 개발 본격화 및 사업화 추진
*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산업부+과기부, 억원): '23년 70 → '24년 607 → '25년 860
- ② (민간 비즈니스) SMR 활용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
- ③ (파운드리) 혁신 제작기술·공정 R&D 및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 ③ (지속가능성 확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및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세부 내용>

- ① (로드맵)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 질적 고도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 마련
- ② (특별법) 로드맵 및 지원사업 근거, 수출 활성화 및 SMR 도입 촉진 등 법제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① 생태계 완전 복원

- (일감·금융) '24년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 (일감·한수원 등, 금융·원산협회 등) 독려
- (R&D) ‘탄력운전(비예타, '25~'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6~'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6년~(계속))’ 예산 반영 추진

- 탄력운전 : 원전과 재생E의 조화로운 확대를 위해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개발
- 차세대핵연료 : 기존 경수로형 핵연료(농축도 4.7%) 대비 농축도가 향상된 핵연료(7% 내외) 개발
(※ 농축기술이 아닌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기술)
- 원자력핵심 : SMR 기자재 제작기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등 R&D 포함 예정

② SMR 선도국 도약

- (선도국) 얼라이언스 총회 계기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24.下)
- (파운드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 추진(~'24.12)

*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 조성 / '25년 신규 예산 반영 추진 예정

③ 지속가능성 확보

- (로드맵)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 마련('24.3Q), 발표('24.4Q)
- (특별법) 법제정 초안 마련('24.2Q), 입법절차 착수('24.下)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2024-04-15

I.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① (해상운임) '23년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 '24년 대규모 신조 인도에 따라 저시황기 지속이 우려되며,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경쟁은 심화될 전망

*'컨' 운임지수:('19) 810 → ('20)1,265 → ('21)3,792 → ('22)3,410 → ('23)1,006 / ('24.4.3) 1,745

**세계 최대 얼라이언스 「2M(Maersk+MSC)」 해체 → 「Gemini(Maersk+Hapag Lloyd)」 결성

- 홍해 사태,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등으로 인한 단기 운임 상승분은 안정화 수순*이나, 글로벌 물류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은 상존

*'컨' 운임지수(SCFI, 유럽)는 1월 2주차(3,130)에 고점 시현 후 하락세(3월 2주차 2,134)

② (친환경규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완전 탈탄소로 목표 상향('23.7), EU의 경제적 규제(배출권거래제 등) 도입('24~) 등 친환경규제 대폭 강화

- 일부 국가*, 대형화주 등 친환경 운송 요구 → 수출경쟁력과 직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생산~운송 줄주기 탄소 저감 요구

II. 국적선사 영향 및 대응현황

① (영향) 그간 축적한 현금성 자산으로 당장의 대처는 가능하나, 저시황 장기화시 시황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 '컨'선사부터 경영난 발생 가능

*벌크선사도 수익감소는 불가피하나, 장기계약 위주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 제한적

- 탄소집약도(CII) 규제 강화*, EU-ETS**('24~) 등 친환경규제 시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친환경이 생존의 문제(위반시 퇴출)로 귀결

*탄소저감:('20~'22) 1% → ('23~'26) 2% / ** 국적선(137척) '24~'30년 6,208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추정

② (선사대응) 글로벌 선사는 선대 확충, 물류시설·기업 인수 등 공격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중이나, 국적선사는 안전자산 확대 등 투자 소극적

- 일부선사*를 제외하고 친환경·ESG 투자가 저조하고 인식도 미흡

* 국내 최초 9,000TEU급 메탄올 이종연료(DF) 추진 '컨'선 9척 발주('23.2, HMM)

③ (그간 지원실적)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22.11)하여 위기대응펀드('23.6 조성) 등 3조원 경영안전판, 수출입물류 지원* 등 적극 추진중

*우수선화주 인증대상 부정기선까지 확대('23.9),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 (평가) '일시적 위기' 속 생존 안전판은 구축, 다만 선사 간 경쟁 심화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기민한 대응 없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

☞ 선사·민간 자본의 친환경·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경영상황·항로 특성을 고려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低시향 위기 극복

<「시향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 주요 추진실적>

경영안전판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23.6)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총 7개사 9척(1,874억원) 지원 ▶공공 선주사업으로 자동차운반선(4척) 확보 지원('23.10 발주)
정책지원 (해진공 강화)	▶해운선사 자발적 출자(2차례, 3,671억원)를 통한 해진공 자본금 확충 ▶해진공 외화채권 총 3.8억 달러 발행(2차례) ▶해진공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해양진흥공사법」 개정('23.10)
시향 분석	▶부산發 한국형 운임지수(KCCI) 개발·발표('22.11~) ▶선사별 경영상황 분석체계 구축중(~'23.12)
선·화주 상생	▶우수선화주 인증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22.12→'25.12)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23.9)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23년 72회, 1,117TEU)
해외 물류 네트워크	▶글로벌 항만물류 투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2.8~) ▶북미(4개소)·베트남(1개소) 해외물류센터 합작법인 설립('23.12)
인력양성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23.7)→외항선원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23.11)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중('23.8~)
친환경 전환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선언('22.11, UNFCCC COP27) 및 사전타당성조사('23.2~10)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등 R&D 6건 추진중('22~)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 39척 지원('22.11~'23, 외항 32척, 내항 7척)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23.2) ▶「친환경 선박 출현에 따른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 발표('23.11) 및 산·학·연 합동 미래연료포럼 운영('23.3~)
디지털 전환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및 공포('24.1)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소형시험선 실험역 실증 추진중('23.8~) ▶부산항 신항 내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2-5단계) 준공('23.10)

II.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①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대응 고도화

- (경쟁력 확보)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찾기’ 노력 지속
- (중소선사 지원) 중소선사 선박도입 특별지원 규모(2,500억원→5,000억원) 및 대상(외항→외·내항)을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
- (맞춤형 대응체계) 분기별로 각 선사의 영업실적, 재무여건 등을 점검·진단하고 등급화한 후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지원방안 제공
- (위기대응 기반) 톤세제 연장을 추진('24)하고 공공선주사업도 다변화·확대('27, 자동차운반선 4척)하여 우리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부담 완화

②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 촉진)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추진('24.上)하고, 투자자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STO 등) 도입 검토
 - * 장기운송계약을 전제로 우량화주와 중소·중견선사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
- (투자저변 확대)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금융·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24)
 - * 선박투자·운용회사의 업무영역을 해운물류 전반으로 확대토록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③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

- (ESG 전환) ESG 컨설팅 시 바우처 제공 및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녹색채권 인수 등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ESG 전환 촉진
 - * ① 녹색채권 직접 인수, ② 중소선사뿐 아니라 중견선사도 친환경 선박 건조 시 해진공 기준금리 적용
- (친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선박 신조 시 총 5.5조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여 선사 진단에서 금융지원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
 - * 선박금융(투자·보증) +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 비금융 지원 등

④ 국적선사 경영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 강화

- (경영 안정화)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24.下)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실증, '24~) 및 사업화('26~) 추진
- (선화주 상생) 전략물자 장기운송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24~), 「공급망법」에 따른 선도사업자 지정 등 선·화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추진 방향으로는

비전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국가 로 도약, 해상 공급망 강화	
정책목표	■ 해상수송력(만톤) : ('21) 9,300 — ('27) 12,000 — ('30) 14,000 ■ 국내 민간투자 비중(%) : ('21) 20.2 — ('27) 24 — ('30) 30 ■ 친환경선박 (척, 5천이상) : ('21) 18(2%) — ('27) 70(8%) — ('30) 118(14%)	
3조원 안전판 본격 가동 + 민간투자 촉진 · 3.5조원 체질개선 투자		
세부 추진 전략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대응 고도화	① 국적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 확보 ② 중소선사 지원 강화 ③ 사전 진단역량 및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④ 자발적 위기대응 기반 마련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① 민간 중심의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② 해운분야 민간투자 저변 확대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	① 국적선사 ESG 역량 강화 ② 환경 규제 대응 지원 강화
	국적선사 경영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 강화	① 국적선사의 경영안정화 기반 마련 ② 선화주 상생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정책과제	소관 부서	시행시기
1.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대응 고도화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강화	해수부	'24.上
▶ 정보분석 및 컨설팅 지원	해수부	'24.上
▶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해수부	'24.上
▶ 한국형 운임지수 개선	해수부	'24.下
▶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용역 추진	해수부	'24.上
▶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기재부, 해수부	필요시
▶ 톤세제 일몰 연장 추진	기재부, 해수부	'24 완료
2.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 선화주 상생형 ESG 투자	해수부	'24.上
▶ 친환경선박 투자자금 지원(회사채 보증)	해수부	'24.下
▶ 해진공 보증사업 강화방안 마련	해수부	'24.下
▶ 투자 참여자 범위 확대 검토	해수부, 금융위	'24.下
▶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해수부	'24.上~
▶ 선박 투자·운용회사 기능 확대 추진	해수부	'24.下
▶ 선박투자 포럼 설립	해수부	'24.上
3.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		
▶ ESG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해수부	'24.上
▶ ESG 경영 유도 금융지원	해수부	'24.上
▶ 친환경 선박건조 패키지 지원	해수부	'24.上
▶ 친환경연료 인프라 펀드 신설	해수부	'25.上
▶ 바이오연료 혼합 선박유 시범운항	산업부, 해수부	'23.9~'25.下
▶ 친환경 전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해수부	'24.上
4. 국적선사 경영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 강화		
▶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 마련	해수부	'24.下
▶ 자율운항선박 실증사업 추진	해수부	'24.下
▶ 우수 선화주 인증 인센티브 강화	해수부	'24.上
▶ 「공급망법」에 따른 선도사업자 지정	기재부, 해수부 등	'24.下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함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 창출·확산
-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 지원
-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 강화
-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
-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 구현
-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 진행
-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 형서비스 제공 활성화 기대

②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웹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 제공
-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하였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
-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제공
-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

-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 추진

※ (현행) 원본 → (개정안) 원본(전자문서를 포함)

-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 예정
-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 구축
-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 구축
-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 예정

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 강화
-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추진
-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 혁신
-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
-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진행

⑥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 추진
-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함.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
-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16 시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제16조 제7항, 제16조제8항)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19 시행
-----	---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고,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및 환경부장관의 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

이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규모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으로 정하며, 환경부장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직접 손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환경부장관이 손해 조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 조사 등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6조제8항제1호, 제8조제4항, 제11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33조제3항 등)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19 시행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손해조사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대상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3조의2 신설, 제13조의3 신설, 제14조제5호, 제20조의2 신설 등)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16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5조제3항, 제35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고용영향 사전평가,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

이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실시 방법,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제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실시 방법 (제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③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제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④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업무 추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우수업소 지정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40조제2항제4호, 제61조, 별표 17, 별표 19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7. ~05.2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원국의 수락서 발급 절차 생략 (안 제11조제1항제7호)

- 현 시행령에 따르면, 수원국 차관신청으로 우리 정부가 사업을 승인 함에도, 수원국 정부가 다시 우리 정부 승인에 대한 수락서 발급 절차가 필요하여,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 생략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② 채권관련 규정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16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93.12.31)으로 발행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사무취급에 대한 조항을 삭제

③ 국제금융기구 용어 통일 (안 제11조제4항)

-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여 “국제개발금융기구”를 “국제금융기구”로 정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mailto:기획재정부_개발전략과) (전화: 044-215-8773, 팩스: 044-215-814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	----------------------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출국납부금 부담금 경감 및 면제대상 확대 (안 제1조의2)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기준연령을 만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
-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경감

②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별표 1)

- 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인용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044-203-2821, 팩스: 044-203-3478\)](tel:044-203-282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안 제53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하향 조정

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별표 2)

- 관광지·관광단지(읍·면 지역)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044-201-1737, 팩스: 044-868-0523\)](tel:044-201-173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 개정 (별지 제34조 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 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하향 조정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044-201-1737, 팩스: 044-868-0523\)](tel:044-201-1737)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1만³m³)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 확대 (안 제10조의2)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30만³m³로 확대
- ②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별표 1)
 - 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인용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mailto:sa-nong@korea.go.kr) (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7.
~05.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기를 자동차 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 과징금 부과시기 연장
 -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개정 (안 제28조의3제2항)
 -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개정 (안 제28조의3제3항)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mailto:sa-nong@korea.go.kr) (전화: 044-203-5149, 팩스: 044-203-4759)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 (안 제24조제1항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16,730원/톤으로 한시('24.7~'25.6월) 경감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mailto: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9.
~06.03.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27.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 (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②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 (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 (안 제33조제6호)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 (안 제4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안 제41조의2제1항)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 (안 제41조의2제2항)

⑤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 (안 제4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⑥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43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43조제1항제11호)

⑦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 (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⑧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안 제27조제3항)**

-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 제도를 '27.12월까지 연장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7, 팩스: 044-203-4762)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9.
~06.03.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이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 (안 제2조의2)**

-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②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 (안 제2조의3)**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유종으로 규정
- ④ 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 (안 제3조의3)
 -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7조제4항·제5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능평가’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 ⑥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 (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 ⑦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 (안 별표 4, 안 별표 7)
 -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 ⑧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 (안 별표 8)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 ⑨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신설 (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생산유종란 추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7, 팩스: 044-203-4762)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 (안 별표 6의2)
 -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변경함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전화: 044-201-6688, 팩스: 044-201-6691)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http://www.moe.go.kr) (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51)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②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 (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③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④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⑤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 (안 제91조의3제3항)

-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⑥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안 제91조의3제8항)

-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5,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 (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②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 (안 제13조제5항 등)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③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 (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5, 팩스: 044-201-5576)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 인허가 시에 수선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된 신축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구조안전확인 부담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방화·방수 성능개선 등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내진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급제로 개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기존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 (안 제58조제2항 등)

-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증가가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구조내력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

② 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표기방법 개선 (안 제6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별표 13)

- 건축물 내진능력을 현행 수치값 표기(진도 및 최대지반가속도)에서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 II 등급)으로 산정하여 표기하도록 개편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 시 적용한 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고, 기존 건축물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내진등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기준 전부를 개정

③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일련번호 현행화 및 문장부호 표기 오류 정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mailto:국토교통부_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5,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19조제2항으로 신설됨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청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기존 신청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공동부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안 제4조제2항제4호)

-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가능
-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

②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신설 (안 제5조의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업무정지로 개별기준을 정함 (별표 4호)

③ 지정취소 시 청문 등 (안 제5조의3)

-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시 및 인증운영위원회 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15일 이내에 공고 및 운영기관·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게재하며 기존 인증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 인증 유효기간 연장 (안 제9조제3항)

-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팩스: 044-201-5574\)](tel:044-201-3772)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 한시적 감면 (안 제31조제1항)

-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 \(전화: 044-201-4761, 팩스: 044-201-5587\)](tel:044-201-4761)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군사시설 보호 구역 정보수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 (안 제8조의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
- ②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9조제2항)
- ③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 ④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12조의2)
- 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12조의3)
- ⑥ 드론공원의 지정·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확인·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팩스: 044-201-5632\)](tel:044-201-4315)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4.15.
~05.27.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공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드론공원 지정·변경신청 등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 시·도지사등이 드론공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원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하며, 드론공원 이용자에 대한 조종자증명 특례범위를 4종(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 비행장치)으로 한정

②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마련 (안 제5조제2항)

-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③ 우수사업자 지원사항 확대 (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의 우선 입주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④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지정취소 요건을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품 등 불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mailto:국토교통부_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팩스: 044-201-5632)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6.
~05.27.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배수성·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 (안 제29조제3항)
- ②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 (안 제29조제4항)
- ③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 (안 제43조제3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tel:044-201-389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9.
~05.29.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 (안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
- ② 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해제 (안 제6조)
 - 다수 시·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
- ③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 (안 제36조)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7\)](tel:044-201-385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4.19.
~05.29.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관련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 (안 제7조)

- 국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신청 및 서류 접수 기관 명확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 (안 제2조의2 신설)

- 승계 전 후 같은 업종이며, 승계 후 10년 이상 사업 유지시 '동일성'을 인정

②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안 제5조의6 신설)

- 사업개시 시점기준, 계속유지 판단기준, 차별성 평가기준, 기여도 평가기준 신설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안 제5조의7 신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행정처분,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채납 등으로 정의

④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안 제5조의8 신설)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안 별표 제2호나목 신설)

-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내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전화: 044-204-7868, 팩스: 044-204-7879\)](tel:044-204-786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5.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절차 신설 (안 제1조의4)

-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 게시
- 백년소상공인은 사업장·제품·포장·용기 등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음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 (안 제1조의5)

- 중기부 장관은 지정취소 문서를 우편·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당사자에 통보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함
- 중대사유는 1회 위반시 지정취소, 그 외는 2회 위반시 지정취소(1회 경고)로 구분 (별표2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전화: 044-204-7868, 팩스: 044-204-7879\)](tel:044-204-7868)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7.
~05.27.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 (안 제13조의4제3호의2)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 (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안 제14조의5제3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 044-204-7924, 팩스: 044-204-792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7.
~05.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 (안 제9조의8 신설)
- ②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마련 (안 제9조의9 신설)
- ③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 (안 제9조의10 신설)
- ④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 (안 제9조의11 신설)
- ⑤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 (안 제9조의12 신설)
- ⑥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 (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 ⑦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 (안 제9조의15 신설)
- ⑧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별표9] 개정)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 02-2110-1645, 팩스: 02-2110-015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6.14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및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정하며,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 범위 지정 (안 제2조)

-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미용·예술표현 등을 위한 피부착색 목적으로 영구적·반영구적으로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명확화

②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안 제3조)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가공 시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도록 함

③ 지방식품안전청에 위임하는 권한 추가 (안 제13조)

- 지방식품안전청이 회수·폐기명령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5.
~06.14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사항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19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이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절차·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7조의2)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정에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② **위생용품의 증명서 종류,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 (안 제26조의2, 별표 8의2,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자유판매증명서와 분석증명서로 규정하고 그 발급의 신청 및 발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 ③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 관련 표시·광고를 신설 (안 별표 4)**
-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④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 7)**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되어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신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tel:043-719-174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8.
~05.28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 (안 제34조제3항제2호 삭제)**
-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 ②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안 제94조제3호 관련 별표 9)**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전화: 044-200-4935, 팩스: 044-868-4976\)](tel:044-200-4935)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9.
~05.2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24일 보도) 발표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투자 가능

②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 (안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mailto:금융위원회) (전화: 02-2100-2536, 팩스: 02-2100-2548)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2024-04-18 발의
-------	-----------------------------------	---------------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 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정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함 (안 제2조)
- ② 법정 의무교육은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2024-04-18 발의
-------	-------------------------------------	---------------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내용뿐임. 그 결과 교육과정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방법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혼란과 논란이 끊이지 않음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② 국가교육과정 개정 원칙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 및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존중,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존중, 사회적 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함 (안 제4조)
- ③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
- ④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 목적 및 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참여 방안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공개하여야 함 (안 제6조)
- ⑤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평가나 연구 결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 100분의 50 이상은 학교 교원이어야 함 (안 제7조)
- ⑥ 국가교육과정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고시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국민, 교육 당사자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포함)를 함께 공개하여야 함 (안 제8조)
- ⑦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100분의 50 이상은 교원으로 하되 학교급별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안 제10조)
- ⑧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민주적인 참여 아래 편성·운영되어야 함 (안 제12조)
- ⑨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3조)
- 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개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15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3(화) 18:00	한일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윤미향,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4(수) 15:00	밀원 부족 해결을 위한 꿀벌목장 제도화 토론회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6(금) 13:30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김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4/22(월)	「THE 현안」 제8호 발간 - 주요국의 AI 교육 정책과 사례	국회도서관	
	4/24(수)	「금주의 서평」제675호(2024-16호) 발간 - 도서명 : 당신의 언어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저자 : 이미숙		
	4/25(목) 09:30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개회식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505호
	4/26(금)	「2024 NABO 재정동향&이슈」제24호 발간		
	4/26(금)	「2024 NABO 경제동향」제42호 발간		
	4/2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4호 발간 - AI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15(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4. 3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4/15(월)	「THE 현안」 제7호 발간 - 주요국의 가치 기반 의료제도	국회도서관	
	4/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2호(2024-4호) 발간 -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4/16(화)	「현안, 외국에선?」제80호(2024-8호) 발간 -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4/17(수)	「금주의 서평」제674호(2024-15호) 발간 - 도서명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 저자 : 제니퍼 D. 스쿠바		
	4/17(수)	「World&Law」제2024-8호 발간 - 2050년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하지?		
	4/1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 발간 -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15~04.2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15(월)	에너지 · 자원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4/16(화)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발간
4/17(수)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 2대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 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